

부산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합44490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락인

변론 종결2019. 3. 7.

판결 선고2019. 3.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390,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3,176,1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3,176,1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1) 및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8.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3,176,18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3,176,1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3,176,1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3,176,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물을 같이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그 중 다액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II.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9. 20. B와 사이에, B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E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을 280,390,903원으로, 보험기간을 2017. 7. 16.부터 2018. 7. 15.까지로,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이 사건 보증계약 제3조), ②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포함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보증계약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B의 D에 대한 계약이행의무 불이행으로 2018. 5. 16.경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2018. 6. 11. D에 280,390,9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은 2018. 4. 27.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5. 30.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5. 13.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4. 13. 채권최고액 30,36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5. 15.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3) 위 해지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1,796,363원, 49,991,020원, 25,036,431원 합계 86,823,814원이다.

라. 피고는 위 재산 처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의 한도 내인 13,176,186원 또는 3,176,1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176,186원 또는 3,176,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로 인하여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또한,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B 사이에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당시 B은 채무 초과상태여서 원고의 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이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80,390,9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86,823,81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9. 2. 18.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같은 가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3,176,186원(= 90,000,000원 - 86,823,8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3,176,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176,1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76,1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윤영

판사김경수

판사김지영

별지

1) 원고는 피고 B에게 280,390,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9. 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2018. 6. 12.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택한다.